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회회의록

(2019학년도 제9차)

회의소집통보일자		2020. 02. 13.	
이사 정수	7명	재적 이사	4명

1. 일시 : 2020년 02월 20일(목요일) 19시
2. 장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이수역1번 출구 탐앤탐스)
3. 참석이사(4명) : 이사 지재근, 박훈, 김형천, 조선미
참석감사(0명) :
4. 불참이사(0명) :
불참감사(0명) :
5. 배석(1명) : 응지세무대학교 사무처장 이진행
6. 안건 : 1. 2019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심의.
2. 2020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에 관한심의.
3. 2019년 법인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학년도 법인비회계 예산(안)에 관한심의.
4. 학교규정 개정의 건
5. 수익용 기본자산 임대의 건
6. 기타사항

간사 홍영섭 :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민법 제 691조(위임 종료시 긴급 처리)에 근거하여 직전 임기 종료된 김형천 이사와 지재근 이사님 그리고 사임하셨던 박훈 이사와 조선미 이사님이 참여하여 4명의 이사가 2020학년도 제9차 법인이사회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회의를 주관 할 이사장이 공석임으로 금일 긴급처리권에 의한 이사회 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무대행이사장을 호선으로 선출하여 줄 것을 참석한 이사들에게 요청하다.

이사 박훈 : 지재근 이사를 직무대행 이사장으로 추천하다.

전 원 : 만장일치로 동의하다.

이사장직무대행 이사 지재근 : 이사장직무대행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간사로 하여금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다.

간사 홍영섭 : 제1안건 2019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심의를 상정하고 관련내용의 설명을 위해 용지세무대학교
이진행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고 말하다.

이사장직무대행 이사 지재근 : 2019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심의가 위임 종료시 긴급 처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이사
들의 의견을 묻다.

전 원 : 전원 긴급처리권의 범위에 해당 한다고 말하다.

이사장직무대행 이사 지재근 : 2019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용지세무대학교의 평의원회 자문을 거쳤는지 묻고, 자문이 이루
어졌다고 배석한 이진행 사무처장이 말하자 2019학년도 교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요구하다.

배석 이진행 : 당초 11,107,038천원에서 9,778,655천원으로 추가경정을
편성했다고 말하고, 세입부문에서 등록금수입이 9,922,246천원
에서 8,377,105천원, 전입 및 기부수입이 1,999,581천원에서
770,984천원, 교육부대수입이 26,682천원에서 21,285천원, 교
육외 수입이 4,300천원에서 12,550천원,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이
△845,771천원에서 596,73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보수가 4,805,514천원에서 3,802,889천원, 관리운영비가
2,747,713천원에서 3,315,736천원, 연구학생경비가 4,589,428
천원에서 2,205,230천원, 교육외비용이 74,009천원에서
70,175천원, 예비비가 220,000천원에서 0원, 고정자산매입지출
이 16,000천원에서 217,795천원, 고정부채상환이 55,683천원
에서 255,683천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이 △681,309천원에서
916,147천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다.

전 원 : 2019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서(안)를 검토한 결과 적

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다.

이사장직무대행 이사 지재근 :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으므로 2019학년도 교
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심의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직무대행 이사 지재근 : 간사에게 제2안건을 상정하여 주기를 요청
하다.

간사 홍영섭 : 제2안건 2020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에 관한심의를 상정
하고, 관련내용의 설명을 위해 웅지세무대학교 이진행 사무처장
이 참석하였다고 말하다.

이사장직무대행 이사 지재근 : 2020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에 관한심의
가 위임 종료시 긴급 처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이사들의 의
견을 묻다.

전 원 : 전원 긴급처리권의 범위에 해당 한다고 말하다.

이사장직무대행 이사 지재근 : 2020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이 웅지세무
대학교의 평의원회 자문을 거쳤는지 묻고 자문을 완료하였다고
배석한 이진행 사무처장이 말하자, 2020학년도 교비회계 예산
(안)의 설명을 요구하다.

배석 이진행 : 2020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세입금액

등록금수입

등록금수입 8,225,051천원

소 계 8,225,051천원

전입 및 기부수입 1,064,016천원

교육부대수입 21,975천원

교육외수입 3,050천원

미사용전기이월자금	
미사용전기이월자금	725,702천원
총 계	10,040,094천원

◆세출금액

보수	3,576,788천원
관리운영비	2,455,698천원
연구학생경비	2,436,544천원
교육외비용	188,000천원
예비비	110,000천원
고정자산매입지출	214,825천원
고정부채상환	200,00천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	852,239천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총 계	10,040,094천원

전 원 : 2020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2020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에 심의를 만장일치로 동의하다.

이사장직무대행 이사 지재근 :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으므로 2020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심의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직무대행 이사 지재근 : 간사에게 제3안건을 상정하여 주기를 요청하다.

간사 홍영섭 : 제3안건 2019년 법인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학년도 법인비회계 예산(안)에 관한심의를 상정하다.

이사장직무대행 이사 지재근 : 2019년 법인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학년도 법인비회계 예산(안)에 관한심의가 위임 종료시 간

급 처리권 범위에 해당하는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전 원 : 전원 긴급처리권의 범위에 해당 한다고 말한다.

이사장직무대행 이사 지재근 : 간사에게 2019년 법인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학년도 법인비회계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요청하다.

간사 홍영섭 : 2019년 법인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당초 146,959천원에서 217,567천원으로 추가경정을 편성했다고 말하고, 세입부문에서 전입금및기부금수입이 40,000천원에서 0원, 교육외수입이 122,000천원에서 151,070천원, 고정부채입금이 0원에서 5,0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부문은 보수가 24,000천원에서 0원, 관리운영비가 148,153천원에서 160,205천원, 교육외비용이 3,000천원에서 9,000천원, 전출금이 366,726천원에서 202,036천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이 △394,903천원에서 △153,675천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이어 2020학년도 법

재
원
금
회
계
예
산
(안)
에
대
하
여
설
명
하
다.

◆세입금액	
전입 및 기부수입	
기부금수입	133,000천원
소 계	133,000천원
교육외수입	121,000천원
고정부채입금	200,000천원
미사용전기이월자금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53,675천원
총 계	300,525천원
◆세출금액	
보수	0원
관리운영비	73,600천원

교육외비용	3,000천원
전출금	366,726천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42,802천원
총 계	300,525천원

전 원 : 2019년 법인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학년도 법인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2020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에 관한 심의를 만장일치로 동의하다.

이사장직무대행 이사 지재근 : 이사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으므로 2019년 법인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학년도 법인비회계 예산(안) 심의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직무대행 이사 지재근 : 간사에게 제4안건을 상정하여 주기를 요청하다.

간사 홍영섭 : 제4안건으로 학교 규정 개정의 건을 상정하다.

이사장직무대행 이사 지재근 : 학교 규정 개정에 관한 심의가 위임 종료시 긴급 처리권 범위에 해당하는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전 원 : 긴급처리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다.

이사장직무대행 이사 지재근 : 이사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긴급처리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의결하다.

이사장직무대행 이사 지재근 : 간사에게 제5안건을 상정하여 주기를 요청하다.

간사 홍영섭 : 제5안건으로 수익용 기본자산 임대 건을 상정하다.

이사장직무대행 이사 지재근 : 수익용 기본자산 임대 건에 관한 심의가 위임 종료시 긴급 처리권 범위에 해당하는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전 원 : 긴급처리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다.

이사장직무대행 이사 지재근 : 이사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긴급처리권의 범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의결하다.

이사장직무대행 이사 지재근 : 상정한 안건이 처리가 완료되었는데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묻다.

이사 박훈 : 어제(2020.2.19일 이사회)의결 사항 중 관할청에 추천 의뢰한 법인임원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교육부에 우리 이사회의 요청사항을 공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하다.

전 원 : 사립학교법 제14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정관 제20조의4 등에 따라 법인이 개방이사 선임절차와 관련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대학평의원회 및 추천위원회의 절차 등 선임을 위한 절차 완료가 오랜 기간 동안 되지 않아 개방이사제도의 취지에 따른 관련법령의 해석상 관할청인 교육부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해 주도록 요청하나, 사립학교법 제24에 따라 긴급처리권이 부여된 구 이사들이 교육부가 제시한 기간까지 추천위원회의 개방이사 대상인원의 2배수 추천 등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완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개방이사 추천 이외에 대학평의원회 및 추천위원회 관련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소정의 시간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전원 찬성하다.

이사장직무대행 이사 지재근 : 기타 안건으로 교육부에 법인이 자율적으로 법인이사를 선임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로 의결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2020. 02. 20. 20시 15분

위 사실을 확인함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직무대행 이 사 지 재 근 지재근

이 사 박 훈 익 훈

" 김 형 천 김 훈

" 조 선 미 김 훈

재 훈 김 훈 김 훈